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	법 인 명
			사업자등록번호

1.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

① 퇴직급여추계액	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총당금				⑥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(①-⑤)
	② 장부상 기말잔액	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 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	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	⑤ 차감액 (②-③-④)	

⑦ 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(⑦)	⑧ 손금산입한도액 (⑥-⑦)	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(⑩)	⑩ 손금산입범위액 (⑧과 ⑨ 중 작은 금액)	⑪ 회사손금 계상액	⑫ 조정금액 (⑩-⑪)

2.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

가.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

⑬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(⑳)	⑭ 기초퇴직연금 총당 금 등 및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액	⑮ 퇴직연금총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	⑯ 기중 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	⑰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(⑭-⑮-⑯)	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(⑬-⑰)

나.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

⑲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	⑳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	㉑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	㉒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(⑲-⑳+㉑)

작성 방법

1. ① 퇴직급여추계액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 "퇴직급여총당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)"의 ㉒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※ 2011.1.1.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·신탁의 금액과 2011.1.1.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·신탁으로 인해 2011.1.1.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·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.
2.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란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"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"을 적습니다.
3.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란에는 ②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(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
4. ⑥ 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적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이 음수(-)이면 "0"을 적습니다.
5. ⑪ 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총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.
6. ⑫ 조정금액란이 양수(+)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, 음수(-)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.
7. ⑭ 기초퇴직연금총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총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.
8. ⑯ 기중퇴직부담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·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9. ⑰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·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